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. 9. 8 선고 2021가단3706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
절차이행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 주식회사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9. 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3. 10. 28. 접수 제11402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 홍성욱

별지